

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동제한 지역내 불법 입식 등 위반농가 조치계획 알림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12048호, 2013.8.1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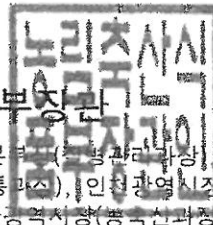
2. 최근 이동제한 기간 중 불법 입식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고발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불임과 같이 “이동제한 지역내 불법 입식 등 위반농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지자체에서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기관에서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도는 '14.1.16일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위반사례 조치내역을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4.12.19(금)일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이동제한 지역내 불법 입식 등 위반농가 조치계획 1 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위기대응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업유통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산림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축산진흥과장), 충청북도지사(축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과장), 경상북도지사(축산경영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축산정책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협중앙회장(축산경제대표),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장

사무관 김정주 방역관리과장 전결 2014. 12. 5.  
박정훈

협조자 주무관 박동화

시행 방역관리과-9961 (2014. 12. 5.)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세종 / http://www.mafra.go.kr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전화번호 044-201-2375 팩스번호 044-868-0469 / kjj6908@mifaff.go.kr / 대국민 공개

## 이동제한 지역내 불법 입식 등 위반농가 조치계획

### 1. 검토배경

- 최근 이동제한 기간 중 불법 입식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 일벌백계 조치 필요
  - \*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불법 입식 후, 출하전 검사에서 양성 발생(11.28)
- 이동제한 지역내 입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을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할 우려가 있어 강력 대처
-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지급제외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농가 경각심 고취
  - 이동제한 위반에 따른 고발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안정비 등 지원 제외 조치 적용

### 2. 추진방향

-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모든 처벌을 통해 재발 사전 차단
  -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이외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함으로써 두 번 다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조치
- 손해배상 청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이외에 적용이 가능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강력히 대응
  - 위반농가는 모든 지원대상에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시 법령 개정

### 3. 검토결과

#### 가 이동제한 위반시 고발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 및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처벌 가능

○ 이동제한 기간 중 불법 입식한 농가 뿐만 아니라 중간공급 역할을 수행한 농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칙 적용

\* 이동제한 중인 농가에 입식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도 초생추를 공급하는 행위는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위법 행위로 판단

□ (조치사항) 이동제한 기간 중 불법 입식한 농장 형사 고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입식 및 중간공급 등 이동제한 위반 사항 확인시 농장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

○ 고발 농장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집중관리

#### 《 관련 법률 》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나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폐쇄명령 가능

-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사육제한 명령

□ (조치사항) 가축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폐쇄 (6개월) 또는 가축사육 제한 명령\* (시장·군수·구청장)

\* 폐쇄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9종, 사육제한 : 9종 외에 법정전염병

- 폐쇄 또는 가축사육 제한 기간 중 적정 이행여부 사후관리

### 《 관련 법률 》

◇ 법률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시행령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뉴캐슬병·소해면상뇌증 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시행령 제7조(가축의 사육제한 명령) ① 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외의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제외**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 다만,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 전액부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등 적용\* 가능

\* 신고시기 및 역학조사 협조, 소독, 이동제한 준수, 살처분 이행 등 적용하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미이행 등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조치사항) 이동제한 명령 위반한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의 최소 40% 이상 감액 지급

○ 또한,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등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을 조사·적용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지원 최소화

□ (개선방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 제외\*

\* 별표 1호, 다목 단서조문에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제외 신설하고, 감액사유 삭제

**《 관련 법률 》**

◇ 법률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

##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감액 비율	감액 사유
○ 미감액(전액 지급)	·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음성인 농가
○ 가축평가액의 20% (80% 지급)	·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
(추가 감액사항) ※ 양성·음성농가 공통 - 가축평가액의 0% (양성 80%, 음성 전액 지급)  - 가축평가액의 20% (양성 60%, 음성 80% 지급)  - 가축평가액의 40% (양성 40%, 음성 60% 지급)  - 가축평가액의 60% (양성 20%, 음성 40% 지급)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조치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4개 이행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5일 경과후 신고하였거나, 조치 이행사항 중 3개 이행  · 가축전염병 미신고하였거나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 또는 조치 이행사항 중 2개 이하 이행
◆ 조치 이행사항	①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② 역학조사 협조 ③ 소독 ④ 가축의 격리·역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⑤ 살처분 이행
○ 가축평가액의 80% (20% 지급)	·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및 조치 사항 이행 여부와 상관 없이 아래의 사항중 어느 1개만 해당되면 20%만 지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 가축의 소유자,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및 그 동거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
○ 미감액 (전액 지급)	· 가축을 살처분하고 병성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농가의 사육 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 물건평가액의 60% (40% 지급)	· 가축을 살처분하고 병성감정 결과 양성이 나온 농가의 사육 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 라 생계안정비용 지원 제외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지원 제외 가능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동제한 명령 미이행 자 등 제외 가능
- (조치사항)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시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지급 제외
  -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 지원\*
    - \* 농가경제 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설정
  - 다만, 소독 미실시 또는 이동제한 명령 미이행 농가 등에 대해서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관련 법률 》

- ◇ 법률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마 손해배상 청구**

(법적근거) 민법 제750조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동제한 명령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반농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조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등이 양성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소송 제기

○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및 매몰,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 위반농가에서 양성이 발생할 경우, 이동제한 기간 연장에 따라 통제 초소 등 운영비 200백만원(5백만원/일×40일) 및 살처분·매몰 비용 30백만원 추가 소요

**<< 관련 법률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바 기타 조치사항**

무허가 축사 여부, 역학조사 비협조, 적정 소독여부, 의심축 신고시기 등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고발, 보상금감액 등 조치

**4. 향후 추진계획**

'불법 입식 등 위반농가 처벌방안' 보고 및 시행(12.5)

○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주체 등을 통해 불법입식 등 위반농가에 대한 강력한 조치계획 적극 홍보 및 교육

지자체별 위반농가 조치사항 실적 집계 및 보고(12월)



